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• 의결

안건번호 제2023-012-11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심인 ㈜비에스씨

의결연월일 2023. 7. 12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 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를 준수하여 채용 인적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 정보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할 것
 - 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의무)를 준수하여 취급 중인 개인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
 - 다.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
- 2.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이 유

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,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	법 인 등 록 번 호
대표자 성명	설 립 일
상시 종업원 수	매 출 액 (' 2 0 년)
사 업 장 주 소	

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()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1. 개인정보 유출 개요

가. 유출 항목 및 경위

피심인이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 미흡*으로 구글 포털사이트에 노출(크롤링)되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.

*

그 결과, 외부 IP^* 에서 총 19개의 개인정보파일(엑셀)이 다운로드 되어 응시자의 개인정보 총 1,679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

**

유출된 개인정보 중 94건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()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심인이 파기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계속 보관하였다.

나. 경과 및 대응

일시		유출 인지·대응 내용	비고

2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()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 94건을 파기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다.

나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이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 정보 1,679건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.

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보유기간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(94건)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계속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**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**에 해당한다.

2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 제2021-2호)」제6조(접근통제)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

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 정보(1,679건)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것은 **보호법 제29조**,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, 고시 제6조제3항 **위반**에 해당한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시정조치 명령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를 준수하여 채용 인적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 정보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할 것
- 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의무)를 준수하여 취급 중인 개인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
- 다.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

2. 처분결과의 공표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	
순번	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		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	
	명칭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자	처분내용	
1 (=	(짜니이나(짜	법 제21조제1항	개인정보 파기 위반	2023.7.12.	니저대려	
	(주)비에스씨	법 제29조	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	2023.7.12.	시정명령	
2023년 0월 0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						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1항 및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제1항 및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2023년 7월 12일

위	원	장	고 학 수	(서	명)
---	---	---	-------	----	----